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37호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4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

1. 자치법규명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과 청소년쉼터에 입소해 있는 청소년의 자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를 분리하여 퇴소청소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 중 퇴소 청소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쉼터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쉼터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퇴소청소년)에 대한 용어, 지원사항 등을 삭제함(안 제2조~제7조)
- 다. 협의회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정 방식에 맞게 정비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라. 그 밖에 자치법규의 조문 수가 많을 경우(통상 30조 이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으로 나누어 규정할 수 있으나 이 조례에서는 그 구분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4개의 장을 삭제함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onhr1@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4
----------	-----

발의연월일 : 2023. 4. 21.

발 의 자 : 김수혜·권성현·김경수·김경희·김남수·김미나
김영록·김혜란·남재욱·박선애·서명일·성보빈
안상우·이정희·이종화·이찬수·진형익·최은하
최정훈·한은정 의원(20명)

1. 제안이유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과 청소년쉼터에 입소해 있는 청소년의 자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를 분리하여 퇴소청소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 중 퇴소청소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쉼터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쉼터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퇴소청소년)에 대한 용어, 지원 사항 등을 삭제함(안 제2조~제7조)

다. 협의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정 방식에 맞게 정비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그 밖에 자치법규의 조문 수가 많을 경우(통상 30조 이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으로 나누어 규정할 수 있으나 이 조례에서는 그 구분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4개의 장을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 법령

다. 현행 조례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창원시 쉼터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 있는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쉼터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쉼터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 범위)”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쉼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쉼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예방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쉼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쉼터 청소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앞에 “제2장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을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쉼터 청소년 지원) ① 시장은 쉼터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쉼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주거·생활 등의 자립지원
3.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의료 지원
4. 직업체험 및 취업을 위한 교육지원
5. 문화·예술·체육 등 활동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쉼터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및 청소년쉼터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앞에 “제3장 창원시 자립자활 청소년 지원협의회”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설치)”를 “(자립자활청소년 지원협의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퇴소청소년, 쉼터 청소년, 쉼터 등에 효율적인 행·재정적 지원을”을 “쉼터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기능)”을 “(협의회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6조제1항의 시책 발굴”을 “쉼터 청소년 자립지원의 기본방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제9조의 제목 “(구성)”을 “(협의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은”을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실·국장 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창원시의회”를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운영)”을 “(협의회 운영)”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u>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1장 총칙</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소재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과 청소년쉼터에서 지내는 특별지원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창원시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u> <u>2. “퇴소청소년”이란 제1호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을 말한다.</u> <u>3. “특별지원청소년”이란 「청소년</u> 	<p><u>창원시 쉼터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 있는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쉼터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정의) -----</u> <u>-----.</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u> <u>2. “쉼터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을 말한다.</u> <p><u><삭 제></u></p>

년복지지원법」 제2조제3호의
청소년을 말한다.

4. “청소년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제1항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아동복지시설 퇴
소청소년(이하 “퇴소청소년”이라
한다)과 청소년쉼터 특별지원청소
년(이하 “쉼터 청소년”이라 한다),
청소년쉼터(이하 “쉼터”라 한다)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
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신 설>

제4조(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
라 한다)은 퇴소청소년과 쉼터 청
소년이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
전한 지역 사회인의 일환으로 정
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
원에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

제5조(대상) 시장이 지원하는 대상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 제>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
하 “시장” 이라 한다)은 유해환경
으로부터 쉼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쉼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예방을 위해 필요한 행정
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
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쉼터 청소년 지원을 위
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쉼터 청소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
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
다.

<삭 제>

<삭 제>

1. 퇴소청소년
2. 쉽터 청소년
3. 쉽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관련 시설

제6조(시책 및 범위 등) ① 시장은 퇴소청소년과 쉽터 청소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시행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퇴소청소년, 쉽터 청소년, 쉽터 등에 대하여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원 시책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 정착 시책
2. 주거용 전세 주택
3. 취업 능력 개발 시책
4. 문화 예술 체육 행사
5. 인성 교육 시책
6. 치료 및 재활 시책
7. 쉽터의 관리 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시책에

제6조(쉽터 청소년 지원) ① 시장은 쉽터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쉽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주거·생활 등의 자립지원
3.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의료 지원
4. 직업체험 및 취업을 위한 교육 지원
5. 문화·예술·체육 등 활동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쉽터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및 청소년쉽터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창원시 자립자활 청소년 지원협의회

제7조(설치) 시장은 퇴소청소년, 컴퓨터 청소년, 컴퓨터 등에 효율적인 행
·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창원시 자립자활 청소년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약한다.

1. 제6조제1항의 시책 발굴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생략)

제9조(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창원시 소관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생략)
2. 창원시의회 의원 2명

<삭제>

제7조(자립자활청소년 지원협의회의 설치) ---- 컴퓨터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

-----.

제8조(협의회 기능) -----
-----.

1. 컴퓨터 청소년 자립지원의 기본방향-----
2.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제9조(협의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 <단서 삭제>

1. (현행과 같음)
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

3.·4. (생략)

④ (생략)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운영) ① ~ ③ (생략)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 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협의회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소재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과 청소년쉼터에서 지내는 특별지원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창원시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퇴소청소년”이란 제1호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을 말한다.
3. “특별지원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3호의 청소년을 말한다.
4. “청소년쉼터”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제1항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이하 “퇴소청소년”이라 한다)과 청소년쉼터 특별지원청소년(이하 “쉼터 청소년”이라 한다), 청소년쉼터(이하 “쉼터”라 한다)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퇴소청소년과 쉼터 청소년이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인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에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

제5조(대상) 시장이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소청소년
2. 쉼터 청소년
3. 쉼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관련 시설

제6조(시책 및 범위 등) ① 시장은 퇴소청소년과 쉼터 청소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시행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퇴소청소년, 쉼터 청소년, 쉼터 등에 대하여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원 시책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 정착 시책
2. 주거용 전세 주택

3. 취업 능력 개발 시책
4. 문화 예술 체육 행사
5. 인성 교육 시책
6. 치료 및 재활 시책
7. 쉼터의 관리 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시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창원시 자립자활 청소년 지원협의회

제7조(설치) 시장은 퇴소청소년, 쉼터 청소년, 쉼터 등에 효율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창원시 자립자활 청소년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

1. 제6조제1항의 시책 발굴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창원시 소관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국내 재직 대학 교수 또는 퇴직 교수 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2. 창원시의회 의원 2명
3. 유관 기관 공무원
4. 관련 시설 소속 임직원 2명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운영) ① 협의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할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충분한 기간 전에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4조(협의결과 반영) 시장은 협의회 의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누구든지 협의회 의 협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지도 점검) 시장은 행정적인 시책 지원과 지원한 예산에 관한 사항을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하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